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드단4470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원 고 심AA (*****-2*****)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피 고 이BB (*****-1*****)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북
변 론 종 결 2015. 12. 3.
판 결 선 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7년 12월경부터 2012. 7. 22.까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한CC와 1974. 2. 18. 혼인신고를 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세 명의 아들[한DD(19**. *. **.생), 한EE(19**. *. *.생), 한FF(19**. **. **.생)]이 있다. 그런데 소외 한CC는 원고와 혼인생활 중 수시로 원고를 폭행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1986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전GG과 1971. 3. 26. 혼인신고를 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삼남매[이HH(19**. *. **.생), 이II(19**. *. *.생), 이JJ(19**. **. **.생)]를 두었으나, 소외 전GG은 1992. 7. 6. 사망하였다. 피고는 1993. 7. 12. 소외 김KK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6. 9.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1997. 12.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상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여행이나 직장동료들과의 부부동반여행에도 함께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8. 6. 29.경 정년퇴직하였고, 원고는 연락이 두절된 소외 한CC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0. 7. 6. 재판상이혼 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0드단3931).

마. 피고는 2005년경부터 신부전증 등 투병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병수발을 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2012. 7. 23. 혼인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997. 12.경부터 혼인신고일 전날인 2012. 7. 22.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